

CCTV설치운영규정

CCTV설치운영규정

1. 목적

교사(校舍) 내.외부 시설물을 화재.도난으로부터 보호하고, 교사 밖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CCTV 설치 현황

구분	설치장소 및 촬영범위	대수	성능
내부	본관중앙현관	1	
	본관동쪽출입구	1	
	본관중앙현관뒤(우유냉장고쪽)	1	
	후관중앙현관	1	
	정문초소	1	
외부	본관중앙현관앞	1	
	본관서쪽출입구(유치원쪽)	1	
	후관서쪽외벽	1	200만화소이상/ 슈퍼IR6 LED3.6m 와이드 보안용 카드
	본관동쪽외벽	1	라
	구령대	1	
	후관후면서쪽외벽(텃밭)	1	
	등나무벤치	1	
	강당좌측외벽	1	
	강당뒷편외벽(주차장)	1	
	본관중앙현관뒤	1	
	창고왼쪽외벽	1	
	강당옥상에서운동장쪽	1	
	본관옥상서편운동장쪽	1	위성능과 동일
	본관옥상동편운동장쪽	1	2019년6월신규설치
운동장서쪽담장등나무벤치쪽		1	
설치총갯수		20	

CCTV 현황



3. CCTV 관리.운영 담당자

구분	직	업무	연락처
관리책임자	교감	관리 및 운영 총괄	031-291-4387
정보공개 담당자	행정실장	CCTV 관련 민원 처리 및 설치유지보수	031-293-5435
운영책임자	정보부장	CCTV 운영 담당	031-291-4387
운영담당자	CCTV 업무담당자	CCTV 운영 실무	031-291-4387

4. CCTV 모니터 설치 장소 : 본교 숙직실

5. 화상정보 관리.운영시 유의사항

- 가. CCTV 촬영시간 : 24시간
- 나. 화상정보 보유기간 :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
- 다. 화상정보 보관.관리.삭제방법 :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.보관되며, 지정된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
- 라.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- 마.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
- 바.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, 「통신비밀보호법」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.
- 사.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(당직실)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- 아.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, 운영책임자, 교감 및 행정실장으로 하고, 기타 필요시 학교장이 지정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(야간당직자 등)
- 자. 야간당직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일 점검하고 운영·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.
- 차.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며,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 이내
- 카.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.

6. 화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

- 가.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.
- 1)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- 2)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 - 3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- 4) 신문,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- 5)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- 6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- 7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나. 열람 등의 요청

- 1) 정보주체는 고색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,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2)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- 3)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지고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- ①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-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-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다.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7. 기타사항

가. 안내판 설치: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

1) 설치장소: 고색초 정문

2) 내용

- 교내 CCTV 촬영 중
- 목 적 : 학생안전관리, 학교시설관리 등
 - 촬영범위 : 교사(校舍) 외부
 -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/녹화
 - 담당부서 : 행정실(031-293-5435)
교무실(031-291-4387)

- 고 색 초 등 학 교 장 -

(가로 : 40cm, 세로 : 30cm)